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717호 2023년 3월 13일(월)

경 상 북 도

■ 공 고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08호) 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2호) 6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3호) 23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4호) 29

시 군

■ 고 시

- 천북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3-62호) 37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3-23호) 40
-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군 고시 제2023-140호) 45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령군 고시 제2023-386호) 47

■ 공 고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1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3-538호) 54
- 영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 풍기성내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3-377호) 5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6호) 61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63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0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취소 한 후 「같은 법률」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처분 사유	근거 법령
부동산개발업 (경북220002)	미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부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7, 2층 201호	등록취소 (2023.3.8.)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확보)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 1호
부동산개발업 (경북150002)	서원종합건설 (주) (김현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산길 328	등록취소 (2023.3.8.)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2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도서관 발전 도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소관 업무관련 조항 수정 및 신설(안 제6조)
-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수정 및 신설(안 제10조, 제12조)
-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북도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북도서관

전화: 054-650-3921 Fax: 054-650-3919, 이메일: hoppang3@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한”을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으로, “법 제24조”를 “법 제17조”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를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를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을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산합리 1498번지”를 “도청대로 200”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6조의 규정”을 “법 제28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을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4. 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

제3장의 제목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 제목 “심의 등”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3.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 중 “법 시행령 제17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서관법</u>」 제22조에 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도서관법</u>」 제25조에 따른 ----- -----<u>같은 법 제17조</u>----- 경 <u>상북도 도서관위원회</u>----- ----- <u>같은 법 제32조에 따른</u> ----- ----- ----- -----.</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u>도서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p> <p>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p> <p>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 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번</p>	<p>제2조(정의) ----- -----.</p> <p>1. ----- 「<u>도서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 ----- -----.</p> <p>2.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p> <p>3. ----- 법 제4조제2항 제1호----- ----- ----- <u>도청대로 200</u></p>

현 행	개 정 안
<p>지에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p>	<p>----- -----.</p>
<p>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2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5조----- ----- -----.</p>
<p>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6조(소관 업무) ----- ----- -----.</p>
<p>1. (생략)</p> <p>2. 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서 규정한 지역대표 도서관 업무</p> <p>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업무</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p> <p>3. 법 제28조----- -----</p>
<p>〈신설〉</p>	<p>4. 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p>
<p>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p>	<p>5. 법 제32조----- -----</p>
<p>5. (생략)</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3장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p>	<p>제3장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10조(구성) ①·② (생략)</p>	<p>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 ----- -----.</p>
<p>1. 당연직 위원은 도 도서관정책담당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p>
<p>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p>	<p>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p>
<p>〈신설〉</p>	<p>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p> <p>2. (생 략)</p> <p>〈<u>신 설</u>〉</p> <p>3. 4. (생 략)</p>	<p>제12조(기능) ----- -----.</p> <p>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p>3. <u>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u></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1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p>	<p>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p>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p> <p>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p> <p>① 「<u>도서관법 시행령</u>」 제25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u>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u>의 심의를</p>	<p>제24조(위탁자료) ①----- ----- ----- <u>위원회</u>-----</p>

현 행	개 정 안
<p>받아야 한다.</p> <p>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도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p>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p> <p>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p>	<p>-----.</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⑦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p> <p>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⑨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⑩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p> <p>⑪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⑫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관련법령발취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 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설립·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

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3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문화 진흥 관련사업 및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문화진흥 관련사업 규정 정비(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하여 독서문화진흥 관련단체 사업 지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운영 활성화 근거 정비(안 제6조)
- 독서유공자의 포상, 표창 등 규정 정비(안 제7조 및 제7조의2)
 - 독서의 달 운영 등에 제한된 포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포상 조항 신설로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대상 확대 및 명확화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북도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북도서관

전화: 054-650-3931 Fax: 054-650-3919, 이메일: buog@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제7조제3항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4. (생 략)</p>	<p>제6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u></p> <p>5. <u>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①·②(생 략)</p> <p>③ <u>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 ----- ----- -----.</p> <p>①·②(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7조의2(포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p>

현 행	개 정 안
	<p>사람·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p>

관련법령발취

○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 1.6 >

경상북도 공고 제2023-524호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작은 도서관 발전 도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작은도서관 정의 등 조항 및 문구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북도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경북도서관

전화: 054-650-3921 Fax: 054-650-3919, 이메일: hoppang3@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제목 “(예산의 지원 등)”을 “(예산지원)”으로 한다.

제6조2항중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작은도서관”이란 「<u>도서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서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u>도서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u>호가목</u>-----.</p> <p>2. ----- 법 제3조제2호----- ----- ----- ----- ----- -----.</p>
<p>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략)</p> <p>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u>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6조(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 ----- --<u>법 제4조제2항제1호</u>----- ----- -----.</p>

관련법령발취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3-62호

천북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화산리 일원 천북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화산리 일원

다. 면 적 : 1,861,708.3m²

(1단계…876,005.3m², 2단계…452,714.0m², 3단계…532,989.0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포항 철강산업 및 울산 자동차 관련부품 제조업을 위주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첨단산업 업종을 집단화, 계열화함으로써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사업용지난 해소

- 경주지역의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1번지(천북지방산업단지 내)

나. 성 명 : 경주천북 기업도시(주) 대표자 김 영 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4. ~ 2022. 12. 31.

변경 - 2004. ~ 2024. 12. 31.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3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 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안동시 고시 제2023-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124호(2020.06.08.) 및 안동시 고시 제2021-323호(2021.11.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풍산중로(2-1)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 정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31-20번지 일원
- 변 경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1-8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변경)

- 기 정 : 도로개설 L=145.0m, B=15.0m
- 변 경 : 도로개설 L=62.0m, B=1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31-20 (231- 20)	천	949	264	건설교 통부	국				
2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0-20 (220- 20)	잡	4	4	안동시	공				
3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0-7 (220 -7)	답	3	3	안동시	공				
4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1-15 (221- 15)	잡	10	10	안동시	공				
5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1-8 (221-8)	답	13	13	안동시	공				
6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1-3 (221-3)	답	53	53	안동시	공				
7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462-2 (462- 2)	구	17,299	141	농림수 산부	국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16-3 (216-1)	답	3,580	189	김○동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269	예천 군새 마을 금고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89-2	근저당	
9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22-12 (222- 5)	전	1,352	205	이○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56-1 구로아파트 15-105				
						이○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 675-1				
						이○호	영주시 휴천동 321-54				
						이○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8 광진연립 205				
10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462-12 (462- 12)	도	3,858	423	농림축 산식품 부	국				

297mm×210mm[백상지 80g/㎡]

수용되거나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읍	도로명					주소	성명	
1	안동시	풍산읍	새동네길 16	주택	블럭기와	93.1	m ²	안동군 풍산읍 하리동 231	임○대	
				창고	블럭판넬	11.3	m ²			
				창고	블럭스레트	31.9	m ²			
				마당	콘크리트	25.0	m ²			
				담장	블록	7.1	m			
				문주	콘크리트	2	EA			
				철문	철제	1	EA			
				가마솥	콘크리트	1	EA			
				무명주	15년생	2	주			
				수도		1	식			
				오수		1	식			
				계량기		1	식			
				창고	블럭스레트	36.3	m ²			
				담장	비닐	9.5	m ²			

군위군 고시 제2023-140호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등 고시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3.

군 위 군 수

1.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덕지구 지표수보강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함
- 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신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대상

지구명	위치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신덕지구	경북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일원	사업완료	군위군 고시 제2018-90호 (2018.11.19.)

3.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군위군청 건설교통과(☎054-380-63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고시 제2023-386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하여 시행자 지정을 하였기에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고령군수

1.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인가 내용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다산 군계획도로 (중로3-8호선) 확·포장공사	도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27-1번지 외 14필지	B=12.0m, L=67.0m A=918.0㎡	인가일로부터 ~ 2026.01.29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 이국형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내용 :붙임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5.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도시활력과 (054-950-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다산면 좌학리	103- 4	구	363	2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좌학리	122-1	대	126	34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손태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254, 102동 506호 (용산동, 용산 블루빌타운)				
3	좌학리	122- 2	구	140	9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좌학리	123- 0	대	311	92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손태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254, 102동 506호 (용산동, 용산 블루빌타운)				

일련 번호	토지 소재 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좌학리	125-2	임	315	27	정태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491길 13, 101동913호 (성화한빛타운)	주식 회사 대구 은행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칠성동2가)	근저 당권	
6	좌학리	126-0	대	350	13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정창노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40				
7	좌학리	127-0	대	155	99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정창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33-3				
8	좌학리	127-1	대	160	157	신보영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3길 28, 203동 503호(2차금 류강남타운)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아리한우 비엔피 주식 회사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8				
						홍미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491길 13, 101동503호 (성화한빛타운)				
9	좌학리	130- 2	대	72	72	허성필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33				
						허재혁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33				
10	좌학리	131-1	전	205	20	다산좌학 리새마을 회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41				
						허성필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33-2				
11	좌학리	131-2	구	77	46	고령군	공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	좌학리	139-4	임	300	90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13	좌학리	964-6	도	111	111	국토 교통부	국				
14	좌학리	964-7	도	294	7	국토 교통부	국				
15	좌학리	978-0	도	466	33	국토 교통부	국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3-5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1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구미시 도량동 도시계획도로(소3-219호)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구미시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구 미 시 장

1. 공람기간 : 2022.03.14.~2022.03.30.
2.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로과(☎ 480-5472~5473)

3. 사업내용

사업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규모	도시계획 결정일자	비고
도시계획 도로사업	도량동 (소2-219호) 개설공사	도량동 820-10 ~ 산24-16	도로개설 L=80m, B=6m	구미시고시 제2016-106호	

4. 사업시행자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성 명 : 구 미 시 장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간

관계서류 및 도면은 구미시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분할측량 후 편입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 련 번 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 고
	읍면동	리				계	도시 계획 시설	성 명	주 소	
합 계			3필지		1,606	1,606	1,606			
	도량동		산24 -16	임	201	201	201	경주최씨 윤자후자 공파중증	구미시 도량동 256	
	“		820 -10	구	88	88	88	국 (농림식품 수산부)		
	“		255 -4	도	1,317	1,317	1,317	구미시		

영주시 공고 제2023-377호

영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 풍기성내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03-1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 풍기성내공원)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3.

영 주 시 장

1. 열람 기간 : 2023. 03. 10.(금) ~ 2023. 03. 24.(금)
2. 열람 장소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3.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0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 명칭 : 영주 풍기성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1,870㎡
- 실시계획인가 면적 : 1,870㎡
- 시설개요

구 분	실시계획 인가면적(㎡)	비 고
합 계	1,870	
도로 및 광장	830	
휴양시설	51	
유희시설	275	
운동시설	242	
녹 지	5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열람도서 비치)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읍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계					2,427	1,870		
1	풍기읍	성내리	142-7	답	45	45	공유지	영주시
2	풍기읍	성내리	143-9	답	135	135	공유지	영주시
3	풍기읍	성내리	196-1	답	264	264	공유지	영주시
4	풍기읍	성내리	197-9	답	185	175	공유지	영주시
5	풍기읍	성내리	203-1	답	1,016	760	공유지	영주시
6	풍기읍	성내리	204-2	답	244	244	공유지	영주시
7	풍기읍	성내리	242-14	구	116	3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	풍기읍	성내리	242-24	구	44	19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	풍기읍	성내리	244-13	도	132	73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풍기읍	성내리	244-14	도	40	31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풍기읍	성내리	246-2	도	132	48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풍기읍	성내리	246-6	도	74	40	국유지	국토교통부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Tel.054.639-636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6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13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체육새마을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외 1필지 일원 면적 : 38,193m ²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용상야구장 조성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망웬스 H10000(200.0m), 이동식웬스 H1500(164m) - 더그아웃 9,000×3,000(이동식 2개소) - 기록석 9,000×3,000(이동식 1개소), 창고 3,000×6,000(이동식1개소) - 원형배수로 집수정 460*1000(3개소), 원형배수로 W=460, 직선(364.0m) - 인조잔디포장 T=35(9,358.0m²)
점 용 기 간	당초 : 2018년 3월 13일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 변경 :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 타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3. 7.(화) 확대 간부회의 시 -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20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예방 활동 강화 - 산불 발생 시군 대상 행·재정적 조치 검토 -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제재방안 마련 	산림자원과
20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소주 세계화 TF팀 구성 - 안동소주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 	농식품유통과
20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축제 관련 안전대책 마련 철저 - 봄 축제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 	사회재난과
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방문 관련 후속조치 - 2. 22. ~ 3. 4. 유럽 방문 관련 부서 후속조치 철저 	전부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